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 - 054호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43호, 2017. 9.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4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4제1항과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8제2항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의 부과·징수대상자) 법 제24조의2 및 영 제10조의2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징수 대상자는 영 별표 1 및 별표 2의 특정물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라 한다.

제3조(특정물질의 종류별 부담금의 징수금액) ①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특정물질의 종류별 킬로그램당 부담금의 징수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특정물질의 종류	화학식	징수 금액	
제1종 특정 물질	제 I 군	트리클로로플루오로메탄(CFC-11)	CFCl ₃	383원
		디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CFC-12)	CF ₂ Cl ₂	383원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탄(CFC-113)	C ₂ F ₃ Cl ₃	306원
		디클로로테트라플루오로에탄(CFC-114)	C ₂ F ₄ Cl ₂	383원
		클로로펜타플루오로에탄(CFC-115)	C ₂ F ₅ Cl	230원
	제 II 군	브로모트리플루오로메탄(Halon-1301)	CF ₃ Br	767원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Halon-1211)	CF ₂ BrCl	579원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로에탄(Halon-2402)	C ₂ F ₄ Br ₂	767원
	제 III 군	클로로트리플루오로메탄(CFC-13)	CF ₃ Cl	383원
		펜타클로로플루오로에탄(CFC-111)	C ₂ FCl ₅	383원
		테트라클로로디플루오로에탄(CFC-112)	C ₂ F ₂ Cl ₄	383원
		헵타클로로플루오로프로판(CFC-211)	C ₃ FCl ₇	383원
		헥사클로로디플루오로프로판(CFC-212)	C ₃ F ₂ Cl ₆	383원
		펜타클로로트리플루오로프로판(CFC-213)	C ₃ F ₃ Cl ₅	383원
		테트라클로로테트라플루오로프로판(CFC-214)	C ₃ F ₄ Cl ₄	383원
		트리클로로펜타플루오로프로판(CFC-215)	C ₃ F ₅ Cl ₃	383원
		디클로로헥사플루오로프로판(CFC-216)	C ₃ F ₆ Cl ₂	383원
		클로로헵타플루오로프로판(CFC-217)	C ₃ F ₇ Cl	383원
	제 IV 군	사염화탄소(Carbon tetrachloride)	CCl ₄	424원
	제 V 군	1,1,1-트리클로로에탄(메틸클로로포름)	C ₂ H ₃ Cl ₃	39원
	제 VI 군	디클로로플루오로메탄(HCFC-21)	CHFCl ₂	30원
		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HCFC-22)	CHF ₂ Cl	42원
		클로로플루오로에탄(HCFC-31)	CH ₂ FCI	15원
		테트라클로로플루오로에탄(HCFC-121)	C ₂ HFCl ₄	30원
		트리클로로디플루오로에탄(HCFC-122)	C ₂ HF ₂ Cl ₃	61원
		디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탄(HCFC-123)	C ₂ HF ₃ Cl ₂	46원
		디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탄(HCFC-123)**	CHCl ₂ CF ₃	15원
		클로로테트라플루오로에탄(HCFC-124)	C ₂ HF ₄ Cl	30원
		클로로테트라플루오로에탄(HCFC-124)**	CHFClCF ₃	16원
		트리클로로플루오로에탄(HCFC-131)	C ₂ H ₂ FCI ₃	38원
디클로로디플루오로에탄(HCFC-132)		C ₂ H ₂ F ₂ Cl ₂	38원	
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탄(HCFC-133)		C ₂ H ₂ F ₃ Cl	46원	
디클로로플루오로에탄(HCFC-141)		C ₂ H ₃ FCI ₂	53원	

		디클로로플루오로에탄(HCFC-141b)**	CH_3CFCl_2	84원
		클로로디플루오로에탄(HCFC-142)	$\text{C}_2\text{H}_3\text{F}_2\text{Cl}$	53원
		클로로디플루오로에탄(HCFC-142b)**	$\text{CH}_3\text{CF}_2\text{Cl}$	49원
		클로로플루오로에탄(HCFC-151)	$\text{C}_2\text{H}_4\text{FCl}$	3원
		헥사클로로플루오로프로판(HCFC-221)	C_3HFCl_6	53원
		펜타클로로디플루오로프로판(HCFC-222)	$\text{C}_3\text{HF}_2\text{Cl}_5$	69원
		테트라클로로트리플루오로프로판(HCFC-223)	$\text{C}_3\text{HF}_3\text{Cl}_4$	61원
		트리클로로테트라플루오로프로판(HCFC-224)	$\text{C}_3\text{HF}_4\text{Cl}_3$	69원
		디클로로펜타플루오로프로판(HCFC-225)	$\text{C}_3\text{HF}_5\text{Cl}_2$	53원
		디클로로펜타플루오로프로판(HCFC-225ca)**	$\text{CF}_3\text{CF}_2\text{CHCl}_2$	19원
		디클로로펜타플루오로프로판(HCFC-225cb)**	$\text{CF}_2\text{ClCF}_2\text{CHClF}$	25원
		클로로헥사플루오로프로판(HCFC-226)	$\text{C}_3\text{HF}_6\text{Cl}$	76원
		펜타클로로플루오로프로판(HCFC-231)	$\text{C}_3\text{H}_2\text{FCl}_5$	69원
		테트라클로로디플루오로프로판(HCFC-232)	$\text{C}_3\text{H}_2\text{F}_2\text{Cl}_4$	76원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로프로판(HCFC-233)	$\text{C}_3\text{H}_2\text{F}_3\text{Cl}_3$	176원
		디클로로테트라플루오로프로판(HCFC-234)	$\text{C}_3\text{H}_2\text{F}_4\text{Cl}_2$	214원
		클로로펜타플루오로프로판(HCFC-235)	$\text{C}_3\text{H}_2\text{F}_5\text{Cl}$	398원
		테트라클로로플루오로프로판(HCFC-241)	$\text{C}_3\text{H}_3\text{FCl}_4$	69원
		트리클로로디플루오로프로판(HCFC-242)	$\text{C}_3\text{H}_3\text{F}_2\text{Cl}_3$	99원
		디클로로트리플루오로프로판(HCFC-243)	$\text{C}_3\text{H}_3\text{F}_3\text{Cl}_2$	92원
		클로로테트라플루오로프로판(HCFC-244)	$\text{C}_3\text{H}_3\text{F}_4\text{Cl}$	107원
		트리클로로플루오로프로판(HCFC-251)	$\text{C}_3\text{H}_4\text{FCl}_3$	7원
		디클로로디플루오로프로판(HCFC-252)	$\text{C}_3\text{H}_4\text{F}_2\text{Cl}_2$	30원
		클로로트리플루오로프로판(HCFC-253)	$\text{C}_3\text{H}_4\text{F}_3\text{Cl}$	23원
		디클로로플루오로프로판(HCFC-261)	$\text{C}_3\text{H}_5\text{FCl}_2$	15원
		클로로디플루오로프로판(HCFC-262)	$\text{C}_3\text{H}_5\text{F}_2\text{Cl}$	15원
		클로로플루오르프로판(HCFC-271)	$\text{C}_3\text{H}_6\text{FCl}$	23원
제2종 특정 물질	제 X 군	1,1,2,2-테트라플루오로에탄(HFC-134)	CHF_2CHF_2	32원
		1,1,1,2-테트라플루오로에탄(HFC-134a)	CH_2FCF_3	42원
		1,1,2-트리플루오로에탄(HFC-143)	CH_2FCHF_2	10원
		1,1,1,3,3-펜타플루오로프로판(HFC-245fa)	$\text{CHF}_2\text{CH}_2\text{CF}_3$	30원
		1,1,1,3,3-펜타플루오로부탄(HFC-365mfc)	$\text{CF}_3\text{CH}_2\text{CF}_2\text{CH}_3$	23원
		1,1,1,2,3,3,3-헵타플루오로프로판(HFC-227ea)	$\text{CF}_3\text{CHFCF}_3$	95원
		1,1,1,2,2,3-헥사플루오로프로판(HFC-236cb)	$\text{CH}_2\text{FCF}_2\text{CF}_3$	39원
		1,1,1,2,3,3-헥사플루오로프로판(HFC-236ea)	$\text{CHF}_2\text{CHFCF}_3$	40원
		1,1,1,3,3,3-헥사플루오로프로판(HFC-236fa)	$\text{CF}_3\text{CH}_2\text{CF}_3$	290원
		1,1,2,2,3-펜타플루오로프로판(HFC-245ca)	$\text{CH}_2\text{FCF}_2\text{CHF}_2$	20원
		1,1,1,2,2,3,4,5,5,5-데카플루오로펜탄(HFC-43-10mee)	$\text{CF}_3\text{CHFCHFCF}_2\text{CF}_3$	48원
		디플루오로메탄(HFC-32)	CH_2F_2	19원

	펜타플루오로에탄(HFC-125)	CHF_2CF_3	103원
	1,1,1-트리플루오로에탄(HFC-143a)	CH_3CF_3	132원
	플루오로메탄(HFC-41)	CH_3F	2원
	1,2-디플루오로에탄(HFC-152)	$\text{CH}_2\text{FCH}_2\text{F}$	1원
	1,1-디플루오로에탄(HFC-152a)	CH_3CHF_2	3원
제XI군	트리플루오로메탄(HFC-23)	CHF_3	438원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물질에는 이성체(1,1,2-트리클로로에탄은 1,1,1-트리클로로에탄의 이성체로 보지 아니한다)를 포함한다.

③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자는 제1항의 특정물질의 종류별 킬로그램당 부담금에 해당 특정물질을 제조·판매하거나 수입하는 수량을 곱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특정물질이 혼합된 혼합물의 경우에는 혼합물 중에 함유된 특정물질의 종류별 중량에 해당 물질의 킬로그램당 부담금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산출된 부담금에서 부담금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4조(부담금의 납부시기 및 방법) ① 부담금의 부과 대상자 중 제조업자는 매월 제조하여 판매한 특정물질(제조업자가 수입하여 판매한 것은 제외하며, 제조업자가 스스로 사용한 것은 판매한 것으로 본다)에 대한 부담금을 다음 달 15일까지 영 제19조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징수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석유화학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지정한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의 부과 대상자 중 수입업자는 수입을 할 때마다 해당 특정 물질에 대한 부담금을 통관일까지 영 제19조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징수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가 지정한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부담금의 면제) ① 법 제24조의3제1항 및 영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4조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 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제 사유별 관계 증명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 수출용 원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수입 신고필증 및 수출신고필증의 사본
2. 외화 획득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 : 외화 획득용 원료 수입 승인서의 사본
3. 수출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 수출신고필증의 사본
4. 외화 획득용 원료로 판매하는 경우 : 외화 획득용 원료 공급확인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수출신고필증의 사본
5. 특정물질 또는 오존층을 파괴하지 아니하는 물질의 제조용 원료로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 수입신고필증의 사본(수입의 경우), 구매업체별 원료 공급계약서 및 공급실적의 사본(판매의 경우), 특정물질 또는 오존층을 파괴하지 아니하는 물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생산제품의 설명서, 제조공정도, 소요량 계산서)

6. 제조된 특정물질을 파괴할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특정물질을 파괴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 특정물질의 파괴확인서

② 협회는 부담금 부과 대상자가 제1항에서 정한 면제 사유별 관계 증명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 증명서류의 제출을 독촉하고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제1항에 따른 면제 사유별 관계 증명서류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부담금의 환급 등) ①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납부한 부담금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환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한 경우 : 수출신고필증의 사본

2. 외화 획득용 원료로 판매하는 경우 : 외화 획득용 원료 공급확인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세금계산서, 수출신고필증의 사본

3. 특정물질 또는 오존층을 파괴하지 아니하는 물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한 경우 : 원료사용업체의 제품 생산실적 및 소요량 증명서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부담금 환급신청을 받은 경우 환급을 신청한 특정물질이 환급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한 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면제 또는 환급된 부담금이 연간 1백만 원 이상일 경우 면제 또는 환급 사유별로 해당 금액을 협회의 홈

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면제받은 부담금의 납부) ① 법 제24조의3제2항 및 영 제10조의3 제2항에 따라 면제받은 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는 협회가 지정한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부담금의 징수관리) ① 협회는 법 제24조의2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 등 수입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관리현황을 매월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관리·운영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에 따른 수입금을 다음 달 25일까지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월요일 또는 공휴일 다음 날)에 납입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1-186호, 2011.10.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VI군의 특정물질 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영 부칙 제2조에 따라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의2 제VI군의 특정물질 부담금 부과는 2012년 1월 1일부터 제조·판매되거나 수입되는 특정물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4-273호, 2014.12.30>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1-186호, 2011.10.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06호, 2022.12.7.>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호, 2023.4.14.>

이 고시는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